

2026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

공군참모총장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원자가 다수 있으니,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내용 [응시자 제출서류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짜에 실시하는 2026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는 **1개 기관, 1개 모집 구분만 응시 가능**합니다.
 - * 기관 : 국방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주관 채용시험에서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음.**
 - * 구분 :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중 **2개 이상 모집 과정에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음.**
 - 원서접수 시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면허증, 장애인 취득정보** 등)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26년 행정/군수직렬 가산자격증 추가 : 1급/2급/3급 전산회계운용사 [붙임 2]
 - 원서접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방통합모집 포털(<https://m-recruit.mnd.go.kr>)**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 응시원서 접수 방법 : 공군 군무원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별첨 1]
 -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관련 문의 :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042] 552-1453/1457 [군전화] 920-1453/1457
-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00 ~ 11:00), 오후(13:30 ~ 16:00)**

1. 채용 예정 인원 : 30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직렬	계급	인원			
행정	9급	15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수시
군수	9급	10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수시
전산	9급	3	• [장애인 구분모집]	전국	수시
사이버	9급	2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수시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 2] 참조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2.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2026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6. 9. 17.)**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예 시 >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자격

- 1)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 자세한 사항은 p.10~13 참조)

* 영어능력검정시험 : 응시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 성적, 2021. 1. 1일 이후 성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 시 유효(성적 인정기간 폐지)

- 2) 채용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0개)

-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 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4)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6. 4. 29.)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5)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에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공군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 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예정일
4. 23.(목) ~ 4. 29.(수) * 4. 29.(수) 18:00 마감	7. 4.(토) * 필기시험 장소공고 : 6. 18.(목)	8. 10.(월) *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 10.(월) ~ 8. 13.(목)	9. 14.(월) ~ 9. 17.(목) * 면접시험 장소공고 : 8. 27.(목)	9. 30.(수)	'26. 11. 1. 이후

-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국방통합모집 포털'에 게시)
- ※ 임용일은 부대사정 또는 군무원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부터 공석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통합모집 포털(<https://m-recruit.mnd.go.kr>)」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1차), 면접시험(2차)

나. 필기시험

- 1) 시험과목(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3) : 9급 5과목 **【붙임 1】** 참고
*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2)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3)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4)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150%) 범위 내

-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5) 필기시험 응시지역 : **성남, 수원, 원주, 청주, 대구, 부산, 광주**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다. 면접시험

- 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2) 평가요소

- | | |
|--------------------------|-------------------|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

- 3) 합격결정 기준

- 면접평가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 1) 필기시험 점수(75%)와 면접시험 점수(25%)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PC, 모바일 접수 가능)

가. 원서접수

- 1) 전국 7개 지역 중 응시자가 필기시험 응시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 필기시험 응시지역 : 성남, 수원, 원주, 청주, 대구, 부산, 광주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2) 접수기간 : '26. 4. 23.(목) 09:00 ~ 4. 29.(수)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지정된 마감시간 ('26. 4. 29. (수) 18:00 정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 3) 접수기간 중 24시간 입력가능(단, 4. 29.(수)은 18:00 정각에 원서접수 마감)
※ 응시표 출력 : 4. 29.(수) 19:00 이후(마이페이지 → [모집공고]지원내역 → 응시표 출력)
- 4) 응시원서 접수 관련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09:00 ~ 11:00 / 오후 13:30 ~ 16:00

나. 접수방법

- 1) 인터넷 국방통합모집 포털(<https://m-recruit.mnd.go.kr>) ⇒ 공군 ⇒ 지원·접수

* 상세 접수 방법은 「공군 군무원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별첨 1]

- 2) 원서접수 절차 : 지원하기 →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제출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4. 29.(수) 19:00 이후부터 출력 가능

※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소지(응시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증명사진(JPG)파일이 반드시 필요(6개월 이내 촬영, 5MB이하)

- 4)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비용 발생

- 5)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 ①,②,③,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료(이체수수료 제외)를 차후 환불 예정(1~2개월 소요)

(※ 응시원서 작성시 면제대상에 체크하고,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서접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증빙서류는 「증빙서류 자동연계(①②)」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자동연계가 되지 않거나 자동연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첨부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중 지원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응시지역 및 기타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단, 응시직렬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접수 취소] 후 다시 직렬을 선택하여 접수해야 함.
- 3) 원서접수 기간 종료[4. 29.(수) 18:00 정각]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4)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주관 2026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가능
- 5)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6)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7) 각종 증명서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원서접수 취소

- 1) 취소기간 : '26. 4. 30.(목) 09:00 ~ 18:00
- 2) 취소방법 : 국방통합모집 포털 ⇒ 마이페이지 ⇒ [모집공고]지원내역 ⇒ 접수취소
- 3)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계좌이체수수료 제외)

6.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 (TOEFL)	기준점수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텡스 (TEPS)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11. 제출서류】 참고

※ 2026년부터 TOEFL(IBT) 점수체계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점수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체계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가)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나)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함.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사이트 주소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http://gongmuwon.gosi.kr)
- 대상 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사전등록 방법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http://gongmuwon.gosi.kr) → 어학성적 사전등록 → 어학성적 사전등록 신청/확인 → 사전등록
- 사전등록 시한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사전등록 기간
 - 상시등록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2024년 이전 응시한 플렉스(FLEX)
 - 정기등록(매월 1~15일/16~31일) :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2025년 이후 응시한 플렉스(FLEX)
 - * 정기등록 시험은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이상 남아야 가능
- 주의사항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조회가 불가하여 사전등록 할 수 없음
 -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삭제 후 재등록이 되지 않음**

- 라)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 수시·특별시험임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3) 시험성적 제출방법

- 가) 토익 성적은 [토익위원회 정보 가져오기]로 시험 정보가 연동되어 별도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고, 토익을 제외한 영어성적은 해당시험 선택 후 시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예정인 경우, 「취득중」란에 체크
 - * 시험성적 정보 등을 잘못 기입하여 해당시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명, 일자, 어학점수, 발급번호 등 기재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시험 중 사전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여권상의 영문성명이 포함된 증빙서류(성적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영어 성적을 추가(수정)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수정) 입력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6. 4. 23.(목) ~ 4. 29.(수)

※ 추가(수정)입력기간 : '26. 7. 4.(토) 09:00 ~ 7. 8.(수) 18:00

※ 추가(수정)입력방법 : 국방통합모집 포털→ 마이페이지→ [모집공고]지원내역
→ 지원서보기→ 시험정보 추가/수정

다) **완화된 기준점수 적용대상자(p.18 참조)** 는 【11. 제출서류】 에 안내된 서류를 '26. 4. 23.(목) ~ 4. 29.(목)까지(우체국 소인분 기준) 등기우편 제출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급 이상

※ 2020년 5월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 (초·중·고급 3종 → 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3) 시험성적 제출방법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취득일자, 인증번호(-제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한국사 성적을 추가(수정)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수정) 입력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6. 4. 23.(목) ~ 4. 29.(수)

※ 추가(수정)입력기간 : '26. 7. 4.(토) 09:00 ~ 7. 8.(수) 18:00

※ 추가(수정)입력방법 : 국방통합모집 포털→ [마이페이지]→ [모집공고]지원내역→ 지원서보기→ 시험정보 추가/수정

다. 성적 입력/제출 유의사항 및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1)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여부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또는 추가입력 기간 중 입력한 시험성적(등급)은 시험 실시 기관 또는 통합채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원서접수 또는 추가입력기간 중 유효한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없음)
*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3) 개명(改名)자 확인/조치사항 : 개명(改名) 이전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를 취득했다면, 해당 시험 실시기관에 '성명 정정을 신청'하여 조치받기 바랍니다.
* **영어 및 한국사 시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성적의 진위 여부 확인 시 성명 불일치자는 유효하지 않은 성적으로 회신**됩니다.

7.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0개)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 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 적용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응시직렬 자격증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 특전에서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2) 가점비율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적용범위

- 가) 취업지원 대상자 : 6급 이하 채용 직위 중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직위
- 나)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6급 이하 채용 직위 중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직위

4) 선발범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5) 시험성적 제출방법

-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종류를 선택한 후 가점비율(10%, 5%, 3%)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보훈번호(또는 증서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발급 보훈지청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원서접수 후 취득(등록)된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을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추가(수정)제출기간 : '26. 7. 2 (목) 09:00 ~ 7. 8.(수) 18:00 [26. 7. 8.(수) 소인분까지 유효]

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산 자격증 소지자

1) 가산 자격증 해당 직렬(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자격증 가산대상 해당직렬(32개)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가산 대상 자격증·면허증 세부내역 : [붙임 2] 참조

2)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3) 자격증 제출방법

가) 자격/면허 정보란의 '마이데이터가져오기'를 통해 자격증을 입력하거나, 추가를 선택하여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0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자격/면허 정보를 추가(수정)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수정) 입력을 하여야 함.

※ 추가(수정)입력기간 : '26. 7. 4. (토) 09:00 ~ 7. 8.(수) 18:00

※ 추가(수정)입력방법 : 국방통합모집 포털→ [마이페이지]→ [모집공고]지원내역→ 지원서보기→ 시험정보 추가/수정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가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2) 필기시험 때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원서 접수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점되지 않습니다.
- 5)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등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바. 필요한 경우에는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및 영어 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격(면허) 또는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 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자. 시험 관련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042)552-1453/1457, (군)920-1453/14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오전(09:00~11:00), 오후(13:30~16:00)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해당자에 한함]

- 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공군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 및 기타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첨부한 '2026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 : '2026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별첨 2]
- 나. 취업지원대상재(의사상자 등) 가점 수정(추가) 대상자 : 해당 증명서(원본) 1부 및 증빙서류

- ① 제출기간 : '26. 7. 2.(목) ~ '26. 7. 8.(수)
* '26. 7. 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절대 불가)
- ② 제출방법 : [붙임 3]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제출서류를 봉투에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부
(우측 상단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
- ③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다.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 1) 적용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2) 제출서류 등 안내

대 상 자	제 출 서 류
㉠ 두 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고,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 의사진단서 원본*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가)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나) (의사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라 검사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으로서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 가) 원서접수 시 청각장애인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의사진단서 원본과 영어 성적표 원본을 모두 등기로 제출
- 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① 제출기간 : '26. 4. 23.(목) ~ '26. 4. 29.(수)

* '26. 4. 2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절대 불가)

② 제출방법 : [붙임 3]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하고, 제출서류를 봉투에 동봉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부
(우측 상단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

③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별첨 1. 공군 군무원 원서접수 매뉴얼

2. 2026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단, 공통과목은 영어 및 한국사이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 렬	계 급	시 험 과 목
행정	9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	9급	국어, 행정법, 경영학
전산	9급	국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이버	9급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붙임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직렬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정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운용사
군수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운용사
전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이버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보내는 사람

[공군 군무원채용 제출서류 재중]

[편의제공/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제출서류 재중]

응시직렬 : 응시한 직렬명 기입

응시계급 : 6급, 7급, 8급, 9급 중 응시계급 기입

응시번호 : 응시자에게 부여된 응시번호 기입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우) 3 2 8 0 0